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류취약지역은 도심 대비 택배 물량이 적고 택배서비스 종사자 수급이 어려워 배송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물류취약지역의 화물 집화·배송을 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전속 운송계약 요건을 완화하여 물류취약지역의 택배서비스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이하 “집화등”이라 한다)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이하 “집화등”이라 한다)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류취약지역이 속한 관할관청에 집화등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 중 복수의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 허가신청) ①·② (생략)	제6조(사업 허가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u>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이하 “집화등”이라 한다)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u> 는 제2항의 첨부서류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 -----.
<u><신 설></u>	1. <u>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이하 “집화등”이라 한다)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u>
<u><신 설></u>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류취약지역이 속한 관할관청에 <u>집화등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 중 복수의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u>

	<u>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u> <u>운송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u> <u>하고자 하는 자</u>
--	--